

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

제정 : 2011. 8. 17

개정 : 2015. 3. 3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하공업전문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외국인 유학생’이라 함은 『고등교육법』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, 제7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 <개정 2015.3.30.>
2. ‘복수학위유학과정’이라 함은 본 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협약에 의거 외국대학의 재학생이 본 대학에서 소속학과의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. <개정 2015.3.30.>
3. 삭제 <2015.3.30.>

제2장 입학, 학점 취득 및 졸업 등

제4조(입학 전형) ① 외국인 유학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의 외국인 특례 입학(편입학 포함)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한다.

② 입학허가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한국어능력을 포함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. <개정 2015.3.30.>

③ 입학허가는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5.3.30.>

제5조(지원자격) 외국인 입학 전형에 지원하는 외국인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기재된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입학전형서류) 외국인 특례 입학 전형에 지원하는 외국인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등록금 및 장학금) ①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본 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협약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「장학금지급규정」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학사) 수업, 휴학, 제적, 졸업 등 학사에 관련된 사항은 본 대학의 「학칙」에 따른다.

제9조(유학기간) ① 신입학에 의한 유학과정 기간은 소속학과에 따라 4학기 또는 6학기로 한다. <개정 2015.3.30.>

② 복수학위유학과정의 기간은 본 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30.>

제10조(신분)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며 본 대학 시설

및 복지혜택,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.

제11조(학점 취득 및 수료) ① 외국인 유학생은 학년에 구애됨이 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이 취득한 소정의 학점에 대하여 「학칙」에 따라 수료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전문학사학위의 취득) 유학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「학칙」에 따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숙소)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이 지정한 숙소에 거주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
제14조(징계 등) 외국인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조기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국내법, 본 대학 학칙 및 제 규정 위반
2. 무단결석 3회 이상
3. 그밖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

제3장 체류자격 유지 및 사증 등

제15조(유학을 위한 체류자격) ①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관련 법규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상 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.

제16조(사증) ①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 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국내 입국을 지원한다. <개정 2015.3.30.>

② 외국인 등록, 체류기간의 연장, 체류자격 변경, 재입국 허가,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 허가, 주소지 변경 등 비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제17조(보험)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의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 중 하나를 가입해야 한다.

1. 국민건강보험
2. 본 대학 지정 유학생보험
3. 국내 타 보험상품
4. 외국 타 보험상품

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2011.8.17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9.24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3.30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